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8. 12. 27.>

# 산림경영계획(변경)인가서

인가번호: - -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경영계획구 명칭 | | | |
| 산림 소재지 | | | |
| 계획기간 | 년 월 일 ~ 년 월 일 (10년간) | | |
|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| 성명 |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| |
| 산림경영계획서 확인자 | 직 | 성명 | |
| 경영계획구 면적 | 만㎡ | | |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을 (변경)인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

| 유의사항 |
|---|
| 1.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해야 하며, 벌채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<br>2.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<br>3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 · 허가(신고를 포함합니다)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인 ·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|

| 인가번호 작성요령 |
|---|
| ○ 연도-인가방법-일련번호(예: 2006-협업-1)<br>1. 연도는 인가 연도를 적습니다.<br>2. 인가방법은 공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공유, 사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중 일반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일반,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협업으로 적습니다.<br>3. 일련번호는 인가순으로 적습니다. |

210㎜×297㎜(백상지 120g/㎡)